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제 개선 심포지엄

2010. 4. 20.(화) 오후 2시 30분 /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

주최 :



한국비영리학회
www.nprosearch.or.kr



아름다운 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제 개선 심포지엄

주최 :



한국비영리학회
www.nprosearch.or.kr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 국비영리학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 연구소와 함께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제 개선 심 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 없이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올해는 G20 정상 회의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이러한 경제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성숙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부금액은 2007년 기준으로 0.9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여 선진국 평균인 2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법인 기부가 40퍼센트 가까이 되어 개인 차원의 기부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부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기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다 쉽고, 보다 편리하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법 개선과제 중 하나로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제정”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익단체를 만들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준칙주의에 의한 등록제로 전환하여 손쉽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여러 주무관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여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공익단체의 모금활동과 조직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므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바람직한 공익신탁법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문화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 법무부와 한 국비영리학회, 아름다운재단 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의미 있는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가 오늘이 자리로 그치지 않고 사회 각계 각 층으로 퍼져나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이 귀 남

지구온난화와 재앙, 빈부격차의 확대, 물 부족, 초경쟁의 확대, 문화적 획일성과 다양성 등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이상 정부의 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손을 잡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의 밑바닥에 '나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자원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여 힘을 합치자는 '나눔'은 이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 현상이 생각을 넘어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좀 더 획기적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공익신탁법제 심포지엄이 바로 제도적 개선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한국 사회 구성원의 기부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문제 해결 노력의 한 축을 이루는 비영리조직의 경우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눔' 현상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더욱 활기찬 활동이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공익신탁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법무부,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한국비영리학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한국비영리학회 회장 문 형 구

오늘 법의 날을 맞아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제 개선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아름다운재단이 창립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기부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기업들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놀랄 만큼 확대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이루어낸 나눔과 기부문화의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희망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져 주는 사회에 미래가 있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가난과 차별로 아픈고 힘겨운 이웃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함께사는 세상’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소액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났고,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부와 자원봉사의 양적인 증대에 걸맞은 성숙한 기부문화와 철학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소액기부를 넘어 자산가들의 계획기부(Planned Giving)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제도의 개선 그리고 민간금융상품 개발 등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제도를 비롯한 기부문화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공론화하게 될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법무부 및 비영리학회와함께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가 모색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각 분야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4월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윤 정 숙

● 프 로 그 램

14:00 ~ 17:30	등 록	
14:30	개 회	
14:40 ~ 14:41	사 회	박태규 교수(연세대학교경제학)
14:41 ~ 15:20	제 1 세션	우리나라의 기부현황과 정책 과제
	발 제	손원익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지정 토론	박두준 사무총장(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항창순 교수(순천향대학교사회복지학과)
.....		
15:20 ~ 15:30	휴 식	
15:30 ~ 16:10	제 2 세션	공익신탁법 제정안
	발 제	이중기 교수(홍익대학교법과대학)
	지정 토론	이연갑 교수(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6:10 ~ 16:20	휴 식	
16:20 ~ 17:00	제 3 세션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 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
	지정 토론	오준석 교수(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부) 정광진 변호사(법무법인 올촌)
.....		
17:00 ~ 17:30	질의응답	
17:30	폐 회	

○ CONTENTS

Session 1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과 정책 과제

발 제	손원익 선임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12
지정 토론	박 두준 사무총장(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25
	황창순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9

Session 2

공익신탁법 제정안

발 제	이 중기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34
지정 토론	이연갑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7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1

Session 3

계획기부 활성화 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 제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54
지정 토론	오 준석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89
	정 광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93

Session 1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선임연구원

토론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사무총장

황창순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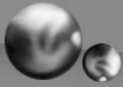
2010. 4.

손 원 익

Kipf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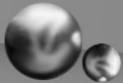
- I 배경
- II 기부금 현황
- III 기부금 관련 제도
- IV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 V 정책과제



I. 배경

-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적 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
 - 정부가 제공하는 일률적인 공공재(서비스)의 공급으로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민간의 자발적 기부 활동에 의한 공공재와 서비스 공급은 정부의 손길 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효율적
- 민간에 의한 공공재 공급은 정부재정의 팽창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도 지님
-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사회복지 등 비영리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위축될 수 있음
 - 기부라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정적 지원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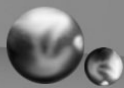
3



II. 기부금 현황

- 기부금 규모
 - 기부금 규모를 정확히 집계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전체 기부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 개인과 법인이 세무상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모 및 연도별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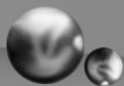
II. 기부금 현황

<표 1>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기부금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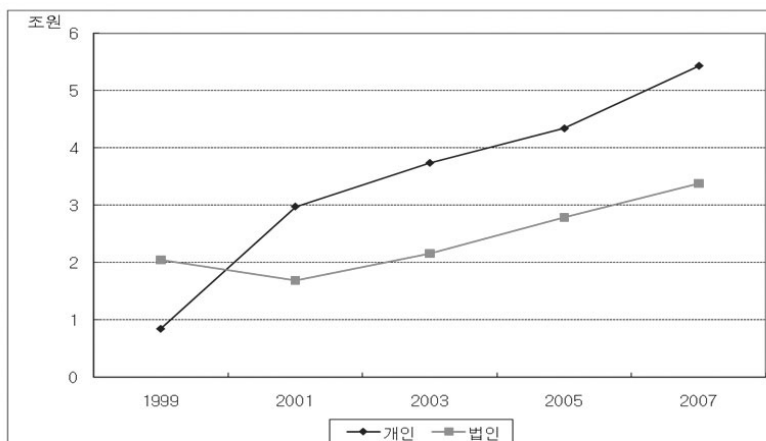
		1999	2001	2003	2005	2007
개 인	기부금 계	2.9	4.67	5.9	7.13	8.81
	근로소득자	0.8	2.7	3.2	3.6	4.15
	종합소득자	0.05	0.28	0.54	0.74	1.28
	소계	0.85	2.98	3.74	4.34	5.43
	비율	29.3	63.8	63.4	60.9	61.6
법 인	금액	2.05	1.69	2.16	2.79	3.38
	비율	70.7	36.2	36.6	39.1	38.4

5



II. 기부금 현황

<그림 1> 법인과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기부금



6

II. 기부금 현황

<표 2> 2007년 기부금 공제 인원 및 기부금 공제액

		신고인원	기부금 공제인원	소득공제 대상기부금	1인당(1법인당) 기부금공제액
개인	근로소득자	1,338만명	348만명	4.15조원	119만원
	종합소득자	299만명	50만명	1.28조원	256만원
	소계	-	398만명	5.43조원	137만원
법인		39.8만개	n.a.	3.38조원	n.a.
합계		-	n.a.	8.81조원	n.a.

7

III. 기부금 관련 제도

1 기부금 지원세제

<표 3> 기부금 지원세제

	대상	손금범위		이월 공제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국가, 지자체 등 사립학교 시설비 등	100%	50%	1년
특례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공립대 병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정연구기관 등	50% 100% 50%	50% 50%	개인: 2년, 법인: 1년 ¹⁾
지정기부금	학술, 장학, 문화, 종료 등 공 익성단체	20%	5%	3년

주: 1)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의 경우 3년

8



III. 기부금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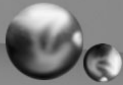
2

국민신탁법인

● 국민신탁법인 현황

- 2007.3.25. 부터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 받아 공유화하고 연구 보전 및 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해 문화유산국민신탁(‘07.4.13. 설립)과 자연환경국민신탁(‘07.4.3. 설립)

9



III. 기부금 관련 제도

2

국민신탁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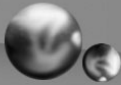
● 국민신탁법인 기부자에 대한 지원

- 국민신탁 회원이나 기부자가 국민신탁법에 내는 회비나 기부금, 기부한 문화유산 등에 대해 다음의 금액 범위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개인: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50%
 - 법인: (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소득금액 * 50%

●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지원

-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공시설세 과세 면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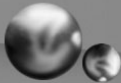
III. 기부금 관련 제도

3

사회환원기부신탁

- 기부방식 및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해 특례기부금 적용
 - 사회환원기부신탁이란 신탁자가 사망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으로 '08.1.1. 이후 설정하는 신탁부터 적용
- 조세지원
 -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신탁수익 지급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으로 정상과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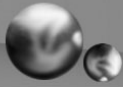
III. 기부금 관련 제도

3

사회환원기부신탁

- 과세특례 대상 신탁
 -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할 것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 위탁자와 신탁자산이 기부되는 공익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금전신탁으로 한정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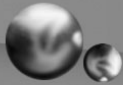
III. 기부금 관련 제도

4

공익기부펀드

-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 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 ▶ 과거에는 기부금을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가 추후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 ▶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자 '08.1.1 이후 설정분부터는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펀드의 수익부분은 비과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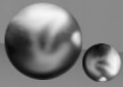
III. 기부금 관련 제도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 ▶ 2006.9.25. 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법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를 제한
 -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현실화

14



III. 기부금 관련 제도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다음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함
 - ✦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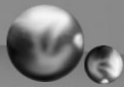
15



IV.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 조세혜택이 인정되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범위
 - ✦ 국가별로 요구하는 요건들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예술, 문화, 환경, 동물보호 등 모든 분야를 포괄
-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세제혜택 방법
 - ✦ 소득공제방식 :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영국
 - ✦ 세액공제방식 : 프랑스
 - 소득공제방식 국가들 대부분은 전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정하여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영국의 Gift Aid는 소득공제 금액을 자선단체가 반환받는 독특한 방식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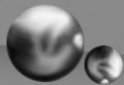


IV.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표 4>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 방식		세액공제 방식	
미국	소득의 50% 또는 30% 한도	프랑스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영국	기부금액의 22% 또는 40%, 공제한도 없음		
일본	(기부금액(소득의 30%한도) -5천엔) 한도		
대만	소득의 100% 또는 20% 한도		
한국	소득의 100%~20% 한도		
독일	소득의 20% 한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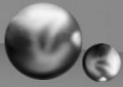


IV.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표 5>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 방식		세액공제 방식	
미국	소득의 10% 한도	프랑스	기부액의 60% 세액공제, 매출액의 0.5% 한도
영국	한도 규정 없음		
일본	기부받는 단체별로 다름		
대만	소득의 10% 한도		
한국	소득의 50% 또는 5% 한도		
독일	소득의 20% 한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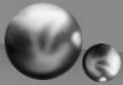


V. 정책과제

●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

-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개인의 기부금액 규모가 증가될 수 있도록 유도
-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 행위가 정기적인 기부로 전환되도록 함
- 현재 기부 미참여자들의 기부활동 참여를 유도
- 개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기부 문화 정착
 - 손원익과박태규(2008)에서 실증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기부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봉사의 경험이 기부자들의 기부 수준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밝힘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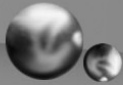


V. 정책과제

● 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미국의 경우 개인기부에 대한 공제한도가 소득의 30~50%이고 영국의 경우 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2000.12월 법개정으로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비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 되면서 개인기부금 규모가 증가
- 최근 개인기부의 공제한도는 2009년까지 15%,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되었음
 - 소득공제의 한도 확대에 따른 기부금 규모 추이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한도 확대 고려

20



V. 정책과제

● 개인기부에 있어서 기부 분야의 다양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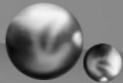
- 현재 개인 기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종교 분야의 비중이 매우 큰 편임 (예: 미국 35.8%, 영국 11%, 한국 약 80%)
-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종교분야는 종전대로 10%를 유지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만 20%로 한도가 확대된 상태임

● 교액기부 유인제도 마련¹⁾

- 부유층의 기부에 대한 세제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여 부유층 기부의 증가를 유도
 - 기부에 따른 공제나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금 이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기부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 마련
 - 상속세를 통해 비기부자들이 고비용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유도

주: 1) 강철희 외(2009)

21



V.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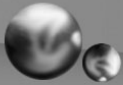
● 공익신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현행 ‘사회환원기부신탁’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요건완화
 -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신탁한 원본의 일정 부분도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금전신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요건을 현물신탁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자선단체의 투명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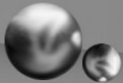
- 현재의 기부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기부자들에게도 기부대상 단체의 운영에 대한 신뢰 필요
- 세법상 우대를 받는 자선단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재무회계 자료 및 자선활동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정책 마련

22



● 전문모금기관 육성

-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개인기부는 법정기부금(100%)으로 법인 기부는 특례기부금(50%)으로 인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기부비율은 2000년 42.8%에서 2008년에는 17.9%로 감소하여 기업기부에 치중되어 있음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전문모금기관을 통한 전략적 모금기획과 경쟁체계를 통한 모금단체간 연계 등 모금기관의 업무개선 필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기부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박 두 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사무총장

■ 우리나라 기부금 현황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비영리부문과 기부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기부금단체 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영리부문 생산성비율, 비영리단체 고용비율 등에 대한 통계조사가 필요함.

※ 참고: 미국 비영리부문 통계

- 비영리단체수: 약 160만개 이상(2008 기준)
-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2% 차지(2008 기준)
- 비영리기관 종사자 수: 960만명, 총 고용의 7%, 총급여액의 480억 달러(2003 기준)*

*출처 1. Giving USA Foundation, Annual Report, 2009.6.10.

2. BSC step by step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agencies(29p), Paul R. Niven, 2003.

■ 정책과제 및 개선 방향

1. 기부금단체 현황조사 및 유형분류에 따른 기부금 코드 부여

● **현행**: 현재 기부금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 기부선진 국민 미국과 영국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① 합법적인 기부금 단체인가?
- ② 합법적인 기부금 영수증인가?
- ③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부금단체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 ④ 기부받는 단체의 기부금 수입 총량을 파악할 수 있는가?
- ⑤ 기부금단체의 DataBase가 명확하여 향후 기부자 연말정산 간편화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는가?

○ **개선**: 기부금단체 명단 및 고유(면세)번호 공개: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시 기획재정부 혹은 국세청에서 일정한 기부금단체유형 분류 및 코드를 부여하게 될 경우 정부와 기부자는 단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및 제도수립이 가능.

○ **개선**: 기부금단체 통합정보 온라인상 공개

기부금단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민들은 기부 시 합법적인 기부금단체의 명칭, 면세번호 소재지, 사업, 기부금사용내역 등 원하는 해당단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 공시기준 및 보고서식 개선

○ **현행**: 일반 공익법인 및 자산 10억 이상의 공익법인은 상증법시행령 제41조,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라 출연재산 및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신고 및 보고함 (단, 종교법인은 제외)

○ **개선**: 자산과 수입을 고려한 단체규모에 따른 보고서식 내용을 개선하여 자산 10억 미만의 중소 기부금단체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개선

- 1단계: 현 자산 10억 이상을 수입 기준(5억 이상)으로 확대(2010년 귀속분 2011년 시행)
- 2단계: 모든 기부금단체의 정보공개를 실시(2012년부터 실시)

3. 비영리조직 관리감독 일원화

○ **현행**: 법률에 따라 각 주무부처, 지자체별로 관리·감독하는 비영리단체의 인허가를 일원화 하는 통

합기구 부재. 미국, 영국, 일본은 모두 단체의 관리감독을 하나의 기관에서 또는 별도의 독립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 (미국 - 국세청, 영국 - 자선위원회, 일본 - 내각부 공익법인위원회)

○ **개선:** 외국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비영리단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 한 후 분산된 법·제도 조항을 간소화하고 단체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단계적인 노력필요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기부금단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

4. 사회부유층 기부 활성화 유도: 재단 출연자·가족의 재단활동 제한 완화

○ **현행:**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제5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현행법상 개인의 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도 본인이나 친족 등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것에 제한이 있음.

○ **개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재단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한범위(현재 5분의 1)를 완화하여 출연자 및 그 가족 등도 합리적인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통해 한국의 사립재단, 가족재단의 설립 증가 유도(현행법에서 자산 100억이상 외부감사제도 자산 10억 이상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등으로 인해 모럴해저드는 예방할 수 있음).

5. 고액기부자의 기부목적 보장 (기부자권리 실현)

○ **현행:** 기부금이 애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효력을 발휘할 법적제재가 없음(관련 사건으로 송금조 회장의 부산대 기부금 소송을 들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 법원은 오히려 송회장의 미납금 무효소송을 기각).

○ **사례:** 미국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재단을 만들기는 부담스러우나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일정의 참여를 원하는 고액기부자들에게 인기.

○ **개선:** 미국의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은 자선기부를 위해 개설된 계정으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기부자나 재단 또는 출연자가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일정 참여권한을 행사함.

○ **개선:** 2억원 또는 3억원 이상 등의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사용처에 관여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에 신설.

6.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 완화

○ **현행**

•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여 출연을 받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추징함. 이러한 제약은 기부자의 주식출연 기부를 제한함.

•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기부해야 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도 있으며 기부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에는 매각도 쉽지 않다는 문제발생.

○ **개선**

주식기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높임.(미국은 20% 제한, 독일은 제한 없음)

현재 5%한도를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10%한도를 20%로 높임. 단,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출연할 경우, 국세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액기부를 독려.

■ **제안**

위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들이 반영되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실행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이를 추진 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기대함.

우리나라의 기부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황 창 순

순천 향대 사회 복지학 과 교수

1. 기부통계와 국세청 자료

본 발표에서 보여준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집계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국세청에 보고된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기부규모에 대한 공식통계도 없었다. 다만 서베이 조사에 의한 기부금 규모의 추정치(2007년의 경우 국민 1인당 10.9만원 기부함)만 존재하였다.

최근 UN에서도 각 나라별로 NPO분야를 국가회계체계에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으로 삼아 이 분야의 활동에 대한 통계치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선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자선적 영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도 미국의 국립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NCCS)와 같은 기부, 자선, 자원봉사,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통계 data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진짜 개인의 기부금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의 차이

국세청의 개인기부 data는 개인이 소득공제의 자격을 갖춘 비영리기관 등에 기부하고, 또 본인이 연말정산시 이를 소득공제항목으로 신고한 경우의 기부통계이다. 하지만 이 통계치에 여전히 오차의 여지가 있는데; (a) 개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단체에 기부한 경우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적 도움의 형태로 주어진 기부금은 누락되며; (b)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관에 기부를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종교적, 개인적 성향, 무지, 게으름, 착각 등)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국세청의 기부금 통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sample survey나 panel 연구 등을 통해서 (a) + (b)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뢰성 있는 자선 통계(charitable statistics)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3. 기부자와 기부금 수령기관의 상호체크체제(cross-checking system) 구축의 필요성

오늘 제시한 기부에 관한 국세청 자료는 개인기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소득공제용)에 의해 파악된 것이다. 하지만 개인(법인) 신고의 정확성을 체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을 수령하는 민간비영리조직(종교기관포함)도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자의 보고의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개인에 의한 세금보고(tax return) 체계와 비영리조직이 미국의 국세청에 보고하는 재무관련 자료의 원천인 The Form 990이 존재한다. 개인이 자선적 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어느 정도 기부했는지를 국세청의 보고체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민간복지조직이나 비영리조직은 정해진 형식에 따라 국세청에 기부금 수령자의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세금공제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질이 높고 신뢰성 있는 보고체계(quality reporting)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4. 기부친화적인 환경의 조성(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

2007년 5월에 제정된 이 법은 그 동안 이 법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수용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가적으로 제시한 법률개정안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의 15%(2010년 이후는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해서 원칙적으로 법인보다 개인기부의욕을 고취시킨다.

(2) 개인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보다 늘려서(지정기부금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일시에 고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3)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확대한다. 현행의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금지 조항을 완화해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보유 및 취득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 한다.

(4) 부담부자산 기부시 부담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임대용 부동산 기부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5) 현행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연재산의 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

고 있지만 이를 완화해서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기본재산 증가목적의 매도 또는 교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을 완화해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6) 농지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농지를 출연 또는 기부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7)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전문가들이 회계감사, 법률자문, 의료서비스의 분야에서 용역기부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상의 일곱 가지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은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개정 요구 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역들이다. 이 가운데 (3)번 항목을 제외한 여섯 가지 법률개정안은 이미 2009년 말에 소득세법, 농지법, 지방세법, 그리고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5.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방안

발표자가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서베이 조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 많은 방안이 있지만 기부금수입과 그 사용내역은 직접 기부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잠재적 기부자도 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은 과세관청이나 가이드스타와 같은 민간단체에 기부수입과 그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 이러한 공시화가 잘 된 대표적인 나라이다.

Session 2

공익신탁법 제정안

발제

이 중 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교수

토론

이 연 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이 희 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공익신탁법 제정안

이중기
홍익대학교

2010. 4. 20.

차 례

- I. 공익활동과 공익단체의 필요성
- II. 공익단체의 법적 형식
- III. 설립과정의 비교
- IV. 공익단체 규제의 평가
- V. 공익신탁법제정으로 공익활동 지원
- VI. 공익위원회의 목표와 효과
- VII. 신탁의 공익성 인정: 절차& 기준, 재량의 부재
- VIII. 공익신탁의 공시
- IX. 공익신탁의 지배구조
- X. 공익신탁 수탁자의 의무와 보수
- XI. 공익신탁의 비용 & 비율
- XII. 공익목적사업 재산과 계산
- XIII. 공익신탁의 모금활동
- XIV. 모금활동의 규제
- XV. 공익신탁의 합병
- XVI. 공익신탁의 취소
- XVII. 보관수탁관리인

I. 공익활동과 공익단체의 필요성

민간영역

- 사인의 이윤동기가 작용하는 영역
- 활성화 방안 - 영리활동의 자유보장

공공영역

- 공익의 실현이 필요한 영역
- 활성화방안 - 행정력의 동원

제3영역

- 행정력의 동원이 비효율적인 공공영역
- 활성화 방안 - 민간의 자발적 · 창의적 참여

II. 공익단체의 법적 형식

공익법인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의료법인)

공익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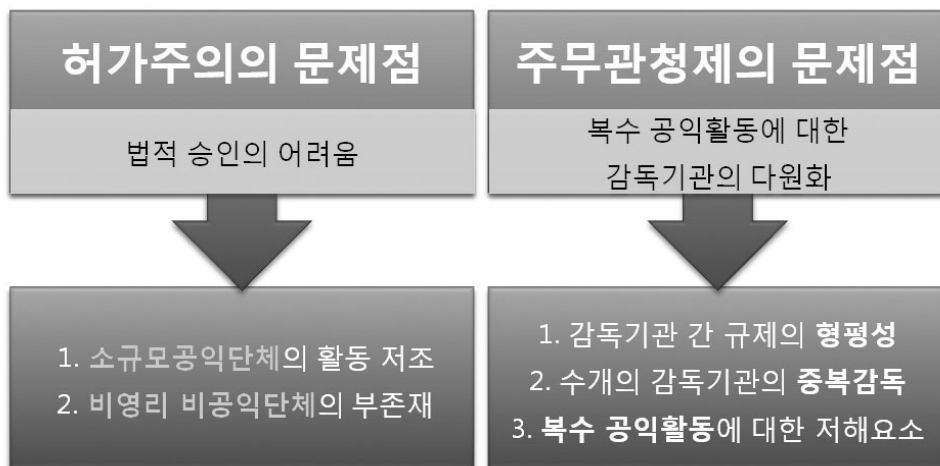
신탁법

신탁법,
제8장 공익신탁 (공익신탁)

III. 설립과정의 비교



IV. 공익단체 규제의 평가



IV. 공익단체 규제의 평가

근본적 의문 : 규제의 필요성 문제

- 제3영역은 행정력을 통한 공익의 실현이 비효율적인 영역
- 민간의 자발적 창의성에 기초해야 효율적인 영역

주무관청의 규제전문성의 한계

- 인허가 행정기관은 소관사항규제의 전문가이나 공익활동의 전문가가 아님
- 예) 의료행위의 규제전문가이나 의료봉사활동의 후원자는 아님

V. 공익신탁법제정으로 공익활동 지원

- 허가주의
- 주무관청제

현행 공익신탁법제

제 정 안

- 준칙주의 : 소규모 공익신탁 활성화
- 공익위원회 신설
 1. 복수 공익활동에 대한 통합규제기관
 2. 규제보다는 자발적 공익활동의 후원
- 모금활동 수단의 다양화 및 규제 공익단체의 재정자립도 고양
- 공익신탁등록부를 통한 공신력 향상
- 공익신탁의 구조조정제도의 유연화

VI. 공익위원회의 목표와 효과

목 표

- ▶ 공익단체에 대한 공중의 신뢰 증진
- ▶ 공익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 증진
- ▶ 공익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공시와 법준수
- ▶ 공익단체의 공중 및 기부자에 대한 책임성의 증진
- ▶ 공익목적사업재산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 증진

효 과

- ▶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의 증가 ☞ 재원확보 용이
- ▶ 공익활동에 대한 협조의 증가 ☞ 활동 용이
- ▶ 주무관청의 규제역할과의 차별화
- ▶ 중복규제의 감경
- ▶ 공익목적사업재산의 증가, 효율적 분배 및 이용

VII. 신탁의 공익성 인정: 절차&기준

공익인정의 신청

신청 자격

- 목적신탁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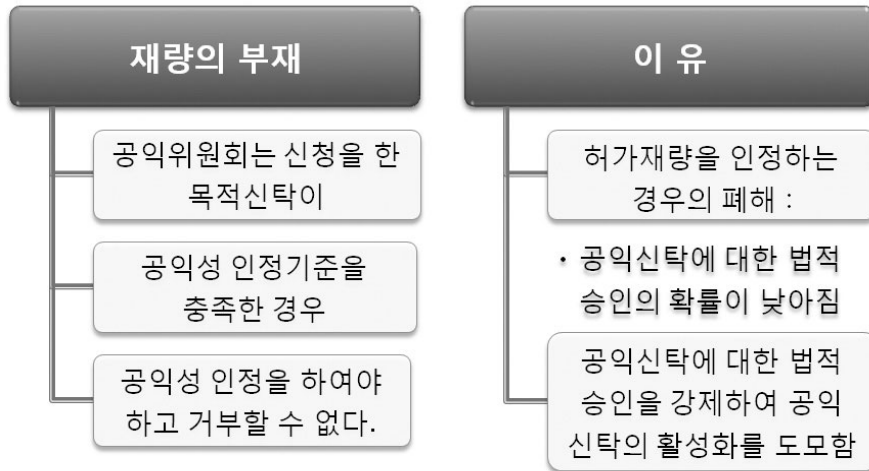
- 하나 이상의 공익목적 사업을 하려는 신탁은
- 공익위원회에 공익성 인정의 신청하여야 함
- 수탁자의 신청의무

신탁의 공익성 인정

공익성 인정기준

-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이 주된 목적일 것
-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
- 잔여재산의 cy-pres 귀속을 신탁행위로 명시
 1.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때
 2. 공익성 인정이 취소된 때
 3. 해산한 때

VII. 신탁의 공익성 인정: 재량의 부재



VIII. 공익신탁의 공시

공익신탁등록부

- 공익위원회는 공익성인정을 한 신탁을 공익신탁등록부에 등록
- 공익신탁에 대해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
-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공시

명칭규제

- 공익성인정을 받은 신탁만이 “공익신탁”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허락

효용

- 공익단체에 대한 공시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 공중의 신뢰가 증가하고, 기부가 활성화

IX. 공익신탁의 지배구조

주요 인물 & 역할

수탁자

주요사무의 의사결정

이행보조자(직원)

사무의 실무집행

신탁사무수임인

위임받은 사무의 집행

신탁관리인

수탁자에 대한 감시·감독

회계감사인

회계감사, 업무감사

설정자

신탁법상 감독권한

공익위원회

공익신탁법에 의한 감독

X. 공익신탁 수탁자의 의무와 보수

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자발적, 봉사의 지위

정책결정자 지위
자기집행의무의 완화

신탁사무위임의 요건 :
공동수탁자의 연대결의

수탁자의 보수

무상성의 원칙

· 유상인 경우, **지급기준 공시**

유상보수의 예외

· “전문가자격”에서의 신탁사무 수임
예) 신탁의 회계사무를 수탁자인
회계사가 수임 받는 경우

XI. 공익신탁의 비용 & 비율

수입의 한도

- 공익신탁은
-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한도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공익목적사업의 비율

- ① / ①+②+③ > 50 (?) % 이상이어야
 - ① 공익목적사업의 실시에 관한 비용
 - ② 수익사업 등의 실시에 관한 비용
 - ③ 공익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XII. 공익목적사업 재산과 계산

공익목적사업재산

- 개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재산

공익신탁의 계산

- 공익목적사업, 수익사업, 모금활동은 구분계리하고,
- 특별회계로 처리

재산목록 등의 비치 등

- 재산목록 등의 작성, 비치, 공시, 열람 제공
- 공익위원회에 대한 제출

회계감사인의 역할

- 재산목록 등의 감사권, 수탁자에 대한 보고요구권
- 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의무

XIII. 공익신탁의 모금활동

모금방법의 다양성

- 공중으로부터의 직접모금
 1. 공개장소에서의 모금
 2. 방문모금 등
- 공중에 대한 기부 호소
- 모금전문가를 이용한 모금
- 영리기업에 의한 모금

허용 및 규제의 필요성

- 허용필요성
 1. 공익단체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 →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
 2. 비용의 자체해결 필요성
- 모금규제필요성
 1. 모금의 대상이 되는 공중 및 기부자의 보호 필요성
 2. 모금에 대한 신뢰보호

XIV. 모금활동의 규제

공중으로부터의 모금

- 공익위원회의 규제
모금활동의 통지 & 모금증서의 발급
- 모금활동 시 모금증서의 제시
- 모금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허가

공중에 대한 기부 호소

- 개념 : 공중에 대한 통신수단 등에 의한 기부 호소
- 공익위원회에 대한 통지와 모금증서의 발급
- 기부의 호소 시 모금증서의 제시

XIV. 모금활동의 규제

모금전문가의 이용

- 모금전문가의 양성
- 등록부의 기재와 공시
- 공익신탁은 등록부에 기재된 모금전문가와
-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 서면계약의 명시사항:
 1. 보수: 산정방법, 액수
 2. 예상모금액: 산정근거 등

영리기업에 의한 모금

- 영리기업은 기부자의 표시나 선전, 광고의 방법으로 제품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다.
- 선전, 광고시, **명시 설명의 대상**
 1. 후원하는 공익단체, 기부문구
 2. 매출액 대비 기부금액 계산방법
- **후원공익단체의 권리**
 1. 명칭사용에 대한 허가권, 철회권
 2. 명시 설명사항의 서면계약

XV. 공익신탁의 합병

공익신탁 지위의 승계

- 공익신탁이 소멸하지만, 새로운 공익신탁이 설립되는, **신설합병**
- 공익신탁이 잔존하는, **흡수합병**

공익신탁 지위의 상실

- 공익신탁이 소멸하고, 다른 목적신탁이 잔존하는 **흡수합병**
 1. 잔존 목적신탁이 공익성 인정의 신청을 한 경우: 인정
 2. 공익성인정의 신청을 않는 경우
 - a. 해산명령 : cy-pres 처분
 - b. 합병의 인가: cy-pres 처분

XVI. 공익신탁의 취소

취소 사유

- 인정기준의 결격사유의 발생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성인정을 받은 경우
- 공익위원회의 명령위반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절차

-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의견청취

등기의 촉탁 및 변경 의제

- 공익신탁의 명칭의 변경등기 촉탁
- 공익이라는 명칭 삭제의 신탁행위의 변경 의제

XVII. 보관수탁관리인

역 할

-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으나
 1. 공익성인정의 취소
 2. 흡수합병에 의한 공익 신탁의 소멸
 3. 해산
-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 잔여공익사업재산을 유사 목적의 공익단체, 국가, 지자체에 증여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 인정취소의 공익단체 등으로부터
-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른 증여를
- 보관수탁관리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이 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왜 法人이 아니라 信託인가?

寄附도 금액이 커지거나 대상자가 많아지면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영미에서는 이 조직이 신탁의 형식을 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영국의 경우 공익신탁이 약 10만여개에 이르고, 한 해에 5천개 이상의 공익신탁이 새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신탁의 맥락에서 公益信託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래 법인(또는 많은 경우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이 주로 그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따라서 종래 신탁법의 논의에서도 공익신탁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삼 공익신탁이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즉 博愛主義가 신탁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법인의 형식을 취하는 것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이미 별도의 법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취지는 공익신탁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을 통해 그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도 예측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신탁법에 공익신탁의 제도가 있었으나 거의 이용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주무관청의 허가 등 국가의 관리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통제가 있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 신탁목적사업의 변경

신탁의 형식으로 기부하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기부자의 의사가 - 심지어 기부자의 사망 후에도 - 존중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신탁행위로 신탁의 목적을 정한 후에는 기부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의 목적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부자로서는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부가 언제

나 利他的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조항의 변경을 허용하면서도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붙이고 있습니다(제67조, 개정안도 같은 취지). “신탁의 본지”가 불확정개념이기기는 하지만, 公益委員會가 신탁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도 같은 제한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법률안 제23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현행「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은 민법의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법인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과 비교하여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다는(감사는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점,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공익신탁과 공익법인을 합하여 “공익단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민법상 법인 중 공익위원회의 공익성 인정을 받은 법인만을 공익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과는 별도로 이 법에서 공익법인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인법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대체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익법인법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그 중 어떤 규정을 흡수하는지, 흡수하지 않는다면 경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컨대 이미 공익법인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공익성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등).

4. 公益性の 인정과 등록

(1) 申請資格

법률안은 신청자격에 관하여 目的信託 외에도 受益者가 불특정 다수인 수익자신탁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신탁과 수익자신탁의 개념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니, 여기서의 목적신탁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익성 인정에 대한 裁量

공익성 인정에 대하여 공익위원회에 재량권을 널리 인정하게 되면 등록하지 않는 공익단체가 증가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익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택한다면 공익위원회의 공익성 인정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 개념이 가지고 있는 불확정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단체의 활동이나 수탁자의 의사에 관한 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공익성 인정을 받기 위해 공익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권고에 신청인들이 사실상 따르는 관행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인정 또는 불인정 처분에 대한 不服節次

법률안은 공익신탁과 공익법인이 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의 인정을 받아야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공익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의 인정 또는 불인정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장의 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이므로 공익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컨대 위탁자의 상속인, 또는 과세관청이 공익위원회의 공익성 인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들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익성 인정 및 등록의 免除

단체 자체의 성질상 공익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단체의 경우는 별도로 공익성 인정 또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해 둘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5. 受託者의 報酬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신탁법의 원칙이지만, 적어도 신탁행위로 수탁자의 보수를 정한 경우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법률안은 공익신탁 수탁자의 무보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즉 효력규정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에는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公益委員會의 任務

아마도 발표자가 마련한 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의 감독을 주무관청이 아니라 독립된 행정기관인 공익위원회가 맡도록 한 데 있을 것입니다. 법률안에 의하면 공익위원회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익성 인정, 둘째는 공익단체등록부의 작성 및 보관, 셋째는 공익단체의 감독. 그런데 널리 보면 공익단체에 대한 감독의 범주에 들지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許可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사익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예컨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데 대한 법원의 허가, 제31조 등). 공익신탁의 경우 그 감독을 법원이 아니라 공익위원회가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허가도 공익위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공익단체의 募金活動

기부금품의 모집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이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법률안은 공익단체의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부금법의 준용으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별도의 규정을 둔다면 기부금법 제3조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부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회 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우 의미있는 주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표문의 내용은 우리 사회가 변화해 가는 여러 가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부문화의 발전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점은 물론이고, 공법학자로서 이러한 공익신탁제도에서 우리 국민의 지위가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국가의 후견적 급부를 요청하는 개인의 모습을 넘어 성숙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 정신 및 기능을 잘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적 틀을 만드는 것이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공익신탁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안”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변화는, 우리 법체계 - 특히 규제법체계-가 그간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사실관계별로 종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해 왔다면 (주무관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허가제를 말합니다), 이제는 각 영역을 아울러 기능별로 횡적 규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큰 관점에서 보면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방향은 통상 종전과 같은 방식의 규제에 있어서는 그 완화를 가져온다고 보입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하게 되면,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상 최소한의 규제를 요하는 것에 맞추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의 절대감소가 아니라, 규제의 체계나 방식의 전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공익신탁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임무는 복합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

회적 변화를 뒤따라가면서 담아내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유인이나 규제수단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사회 변화를 뒤따라가는 동시에 이끌어가야 하는 다소 모순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1) 동법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제상 존재하고 있으나 그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던 공익신탁제도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새로운 틀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제상 완전히 새로운 제도도 아니면서, 현재 활용도가 높은 비영리법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전략으로서 적절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비영리법인제도에 대한 유효한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이 법에서는 기존의 주무관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신탁에 대한 허가제도가 ‘재량권’의 엄격한 행사로 그러한 활동을 위축시켰으므로, 이를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그 기준의 설정과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기능을 전담할 ‘공익위원회’를 신설하여 그에 맡기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주무관청의 허가 및 감독권을 전부 신설되는 공익위원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규율대상이 되는 공익신탁을 통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에는 어떠한 행위까지 포함되는지요? 만약, 현재의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이 단지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기관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면, 어떤 정도이든지 그러한 운영행위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 법률안 별표에 열거된 23가지의 사업은 그 종류만으로 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 모든 사업에 관한 공익신탁을 공익위원회가 전담하는 경우, 만약 공익신탁이 매우 활성화된다면, 조직상, 예산상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행위규제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발표자께서 연구하신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Charity Act에서는 다른 규제기관의 1차 규제관할권을 인정하고, Charity Committee는 그러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익신탁법에서도 그러한 여지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주무관청이 직접 규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ession 3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제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 연구위원

토론

오 준 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 교수

정 광 진

법무법인 율촌 / 변호사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0. 4. 20

발 제 박 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 이상신(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박 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I. 서설

II. 계획기부의 의의와 현황

1. 계획기부의 의의
2. 계획기부의 현황

III.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구조와 시사점

1. 기부형식의 유형화 기준
2. 기존의 단체에 대하여 기부하는 경우
3. 새로이 기금을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
4. 신탁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5. 시사점

IV. 결어 : 정책적 제언

1. 유연을 통한 계획기부활성화를 위한 유연제도의 유연화
2. 신탁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3. 계획기부 지원 법제도 악용 대비책 병행

I. 서설

- 유산의 무조건적인 자녀상속 관행의 변화
 - 자녀에 대한 상속의 폐해
 - 축적된 부의 사회환원 인식 제고
- 다양한 계획기부의 제도적 가능성 검토의 필요성
 - 기부 활성화와 이와 관련된 기부의 사전계획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 경직화된 법제도가 기부방법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 검토
 - 다양한 계획기부의 사례를 갖고 있는 미국 사례의 우리나라 수용가능성 검토
 - 공익신탁제도 개선방안 모색도 계획기부 활성화 방법의 한 예
- 계획기부 관련 법제도 연구의 의미와 한계
 - 현실적인 법개정사항의 도출
 - 법제도 개선은 계획기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제
 - 계획기부의 이론적 검토(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활성화와 연계된 금융상품 개발 자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

II. 계획기부의 의의와 현황

1. 계획기부의 의의(1)

- “계획기부”의 일반적 정의
 -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없이 무엇인가를 주거나 해주는 것
 - 대체로 지속적이고 즉흥적이지 않다는 특성
- “기부”의 의미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식품”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기부한 재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
 - 세법 :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필요경비 산입) 등 혜택.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재산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도 기부 가능
 -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한 법적 의미 : 기념명판의 경우 부담부 증여 Vs. 전액 증여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3

II. 계획기부의 의의와 현황

1. 계획기부의 의의 (2)

□ “계획”기부의 의미 : 다른 기부와의 차이 (미국의 예 중심)

- 기부자에 의한 통제 가능
- 소득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 경감과 연금지급 결함의 가능
- 재무계획 및 부동산계획과 관련

□ “계획”기부 “재산”의 특징

- 미래에 사용 : 기부의사를 밝히는 시기와 기부재산 이전시기의 격차 발생
- 현금 이외의 재산 : 평가 문제와 세제 이외 법제도도 고려 필요
- 상대적으로 큰 규모 : 기부시 법적 검토 신중, 추가 재정부담 고려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4

II. 계획기부의 의의와 현황

2. 계획기부의 현황

□ 우리나라의 “계획기부”의 현황

-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는 찾기 어려움
- 통계청 자료(2009) : 2008년 기부경험 32.3%, 직접기부 <간접기부
- 강철희 외 2인(2009) 논문 : 2007년 유산기부의향 18.7%
- 국세청 자료(2009) : 2008년 개인기부 557,159명, 1조 4천억원 규모
- 70대 이상은 1만3000명, 798억 원, 1인당 630만3000원(월 52만원)

□ 미국의 “계획기부”의 현황

- Giving USA(2009) : 2008년 개인기부 2,292억달러(75%), 기업기부(5%), 재단기부(13%), 유증기부 226억달러(7%)
- 계획기부 : 유증의 활용도가 높음, 연금, 신탁도 이용.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5

Ⅲ.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1. 기부형식의 유형화 기준

□ 다양한 기준의 존재

- 재산별, 정기여부, 기부의사 시점별, 신탁설정여부 등
- 3가지로 단순화 : 법적 구조 파악의 용이 (보험에 의한 경우도 있음)
 - (1) 기존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 (2) 새로운 자선단체의 설립
 - (3) 신탁설정
- 소유권이전 여부 및 시기, 원본과 수익의 귀속주체, 과세상 혜택 등의 차이 존재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6

Ⅲ.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2. 기존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 대가 없는 증여가 있는 경우

- 현금기부 : 간단, 전액에 대한 과세혜택 (소득공제 한도 제한은 있음)
- 주식 등 현물기부 : 평가문제 존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혜택
(미국) 과대평가에 대한 제재로서 2006년 세법개정 있었음
(우리나라) 과대평가시 가산세, 조세포탈 적용. 적정한 재산평가 문제.
부동산의 경우 시가만큼 소득공제(한도제한은 존재), 높은 양도소득세 및 거래단계 세금 감면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7

Ⅲ.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2. 기존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2) 대가 있는 증여가 있는 경우

- 저가양도 : 평가문제 존재. 시가만큼의 과세혜택.
- 부담부증여 : 대가인지 여부도 논란. 대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문제.

[1] 기부연금 (Immediate Gift Annuity)

(미국) 기부금공제혜택, 고정수입 확보, 자본이득세 및 상속세 경감

(우리나라) 기부시 양도소득세 부담, 연금의 현재가치화 문제

참고 : 장기저당담보주택(주택연금제 대상)에 대한 1주택 1주택 특례(소득세 법시행령 155조의2) 등

[2] 기부거치연금 (Deferred Charitable Gift Annuity)

(미국) 기부연도에 기부금공제혜택, 기부금 수령시 자본이득과세 부담

(우리나라) 기부시 양도소득세 부담, 연금의 현재가치화 문제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

Ⅲ.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2. 기존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3] Retained Life Estate Gifts

(미국) 기부시 잔여권의 현재가치금액만큼 자본이득세 부담, 기부재산과 잔여권의 현재가치금액의 차이만큼 기부시 소득공제

(우리나라) 잔여권 개념은 없음. 사용권능은 존재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적용한다면 사용권능의 현재가치화 문제됨. 증여세 과세의 문제 적용될 수 있음(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어야 함).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

III.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2. 기존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3) 유증

- 계획기부의 단순화고 중요한 형태
- 특정유증, 잔여유증, 조건부유증, 정액유증, 정률유증, 이연기부 등

(미국) 상속세 과세혜택 (2010년 한시적 상속세 폐지)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혜택

유언의 활용도 및 유언방식의 차이 존재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0

III.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3. 새로이 기금(Fund)을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

(미국) 규모가 작거나 신설 비영리법인에게 유리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공익법인과 공익신탁과 차이 있음

(1) 공동수익기금(Community Fund)

- 여러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공동’ 투자 기금을 기부받아 자선기관의 전문 투자자의 관리를 받는 기금

(2)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단체, 가족, 개인을 대신하여 기부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
- 즉시 자선기부금공제를 인정하면서도 기부는 실제 그들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나중에 지출하는 형태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1

Ⅲ.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4. 신탁(Trust)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1) 자선잔여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 기부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것(신탁종료시 수탁자에게 재산귀속)
- 기부금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식은 현재 가치대로 평가되어 전액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도 없음
- CRAT(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 : 연금처럼 신탁 수익이 고정
- CRUT(charitable remainder unitrust) : 신탁 수익이 변동(일정비율)

(2) Charitable Lead Trust(CLT)

- 신탁기간중 자선단체에 수익 기부, 신탁종료시 가족에게 재산귀속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2

Ⅲ.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5. 시사점

(1) 미국 계획기부의 특성

- 다양한 계획기부 양식 존재
- 미국법제도와 우리나라의 법제도 차이 존재 : 잔여권 인정 여부 등
- 활용도 높은 유증의 경우 다른 법제도적 제한 검토 필요

(2) 자선잔여신탁 등의 적용가능성

[미국법상 형태의 도입가능성]

- 소유권의 배타성과 일물일권성 (미국과 차이)
- 신탁의 법적 실체 부정.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인정(후자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 유사)
- 유류분제도에 의한 상속인의 권리침해 가능성 배제(미국과 차이)
- [입법론상 가능] 개정필요성 정도가 관건, 공익신탁에 관한 법개정 필요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3

IV. 결 어 : 정책적 제언

1. 유연을 통한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연제도의 유연화

-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탁 관련 자필증서 등 요건의 완화

2. 신탁제도 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신탁유형의 법적 허용
- 기부시점에서 기부재산의 소득공제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추정보다는 귀속시 소득과세 문제로 처리(금액 제한은 설정)

3. 계획기부 지원 법제도 악용 대비책도 병행

- 기부재산 사용처의 투명성 확보
- 조세회피 수단사용에 따른 통제

□ 법제도 개선은 다양한 수요 충족과 기존 법률의 조화의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에서 이루어져야 함

- 예컨대 공익신탁에 대한 법제도 정비의 경우 신탁법,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공익법인과 공익신탁의 형평성), 민법(유언제도 및 유류분제도의 충돌 여부), 기부관련 법제도(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조세 회피 방지를 고려한 제한) 등 고려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4

감사합니다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¹⁾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 문화연구 소연구위원)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 문화연구 소연구위원)

I. 서설

유산을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남겨주는 풍토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축적된 부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도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축적한 부에 대해 사회적 환원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느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발적으로 유산을 기부하기 위해 사망 전에 미리 계획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산을 생전 계획 하에 기부하는 계획기부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부나 유산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동일하지 않고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법제도가 달라 미국의 계획기부의 예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기부의 여러 형태 중 계획기부가 기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볼 때 기부 자체의 활성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계획기부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1)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

비교함으로써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

계획기부에 대한 법학 이외의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적 논의와 계획기부를 실제 금융권을 매개로 금융상품의 형태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II.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의의와 현황

1. 계획기부의 의의

기부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의미로서 “계획기부(planned giving)”는 우리나라 현행법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계획기부는 planned giving이라는 영문의 표현처럼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없이 무엇인가를 주거나 해주는 것으로서 기부를 즉흥적인 일회성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계획기부를 “기부”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볼 때 먼저 기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계획기부의 의의를 알아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들 수 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연이나 기부에 대한 개념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기부금품”을 일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대급부 없이 주는 것이 기부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부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부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다 자세히 되어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2) 기부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2 참조.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 기부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는 온전히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산의 이전이 있을 때 이전된 재산 전부의 가액이 아니라 그 재산의 일부가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기부법(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에서 기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서 "기부"라 함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금전적 가치도 요구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영리 단체에서 다른 비영리 단체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된다. 기부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양도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³⁾ 양도자가 기부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 외에 어떠한 혜택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의 선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자가 자산을 기부하면서 개인적인 혜택을 제공받았다면 제공받은 개인적인 혜택의 공정거래가를 초과하는 자산의 가치만 공제 가능한 기부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⁴⁾

교회에 관련된 것이지만 교회건축을 위한 기부자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기부자들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념명판을 건물에 새기는 것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념명판에 이름이 새겨짐으로 기부에 대한 일종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부행위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기부공제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의 대가성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⁵⁾ 기부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줄 때 기부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지를 판단하거나 기부금액을 판단할 때 기부시 기부자가 받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이든 미국이든 대가없이 주어지는 기부를 "계획"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기부를 계획한다는 의미의 계획기부라는 개념 자체는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정착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⁶⁾

계획기부(planned giving)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계획기부 대상 재산의 속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계획기부의 과정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기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되고 일정한 시간을 넘어서 수행되는 일련의 행위들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계획기부의 유형은 자선기부기회의 다양성, 계획과정의 가변성, 그리고 기부자의 소망과 환경에서 오는 차이에 따라 다양

3) If you receive or expect to receive a financial or economic benefit as a result of making a contribution to a qualified organization, you cannot deduct the part of the contribution that represents the value of the benefit you receive (<http://www.irs.gov/pub/irs-pdf/p17.pdf> : p.169).

4) United States v. American Bar Endowment, 106 S. Ct. 2426 (1986)

5) IRS News Release IR-92-4.

6) Richard D. Barrett/Molly E. Ware, CFRE, *Planned Giving Essentials* (2nd ed), Aspen Publishers (2002), pp. 3-5.

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계획기부의 유형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계획기부가 다른 기부와는 다른 세가지 특징으로 계획기부의 특성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계획기부가 활용되어 실제로 기부가 행해졌을 때의 목적이 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의 설치를 통해 기부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선단체에 기부된 계획기부재산은 기부자에게 다음 중 하나 혹은 결합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기부자에게 자선소득세공제, 자본이득세의 최소화, 상속세 감소, 혹은 기부자기타 제3자에게 일생동안의 연금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계획기부재산은 기부자에 의해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기부재산은 재무 및 부동산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결정된다.

계획기부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계획기부시 기부재산은 다음의 특징을 대체로 갖는다. 기부재산은 미래에 사용된다는 점, 현금 이외의 형태의 재산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큰 규모(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에 큰 규모)의 재산이라는 점 등이다. 기부재산의 미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부의사를 밝히는 시기와 실제 기부의사에 따라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시기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현금 이외의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이 기부재산을 이루기 때문에 평가문제나 민법, 상법 등 여러 사법상 법제도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계획기부에 대한 여러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할 때 미국 법제도를 민사법분야의 경우 주로 대륙법계를 수용한 우리나라 법제도에 그대로 도입하지 못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 기부에 대해 신중하고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고 기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기부의 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계획기부의 현황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계획기부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유산을 좀 더 바람직하게 사용하기 위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유산기부=계획기부”의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많다. 유산기부를 상속재산(또는 상속재산이 될 수 있었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재산 소유자의 사망전에 미리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기부를 의미하는 경우 유산기부의 기부를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한다는 의미인 계획기부와 유사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를 얼마나 하고 그중 계획기부의 형태로 하는 것의 현황 자체를 알기는 쉽지 않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09)의 경우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이상 가구원 37,00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2009.7.6을 2009년 조사대상시점으로, 2009. 7. 6.~ 7. 20.(15일간)을 2009년 조사실시기간으로 하여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⁷⁾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경험자가 32.3%이고 기부방법의 경우 대상자 직접 후원 보다는 사회복지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의 공익단체를 경유한 후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갖고는 계획기부의 정확한 현황을 알기는 어렵다.

[표] 2009년 후원(기부)인구 및 후원(기부)방법

단위 : %

계	후원인구	후원방법					
		대상자 직접 후원	언론기관	사회복지 단체	종교단체	기업(직장)	기타
100	323	15.9	29.5	39.7	23.2	16.8	2.9

참고 : 지난 1년간, 복수 응답, 15세 이상 인구 자료임.

출처 : <http://www.kostat.go.kr> [2010.4.5 방문]

한편 계획기부와 유산기부와 동일한 개념이라 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유산기부의 의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다.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시민 1,016명 응답자중 1%라도 유산기부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총 190명으로 18.7%로 나타나고 있다.⁸⁾ 이러한 연구의 경우에도 계획기부 자체의 규모나 유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기부를 하는 경우 모두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기부라 하는 경우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실제로 개인기부의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 인원수 및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는 국회 조세지출보고서와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의해 확인 가능하다. 2009년 국세청 통계연보⁹⁾에 따르면, 2008년 세제혜택을 받은 개인기부(종합소득신고자에 한한 경우)는 인원수로는 557,159명, 금액으로는 1,395,708백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기부의 일부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중 계획기부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해 내기 어렵다. 다만 연령별 기부금 신고현황을 보면 20대 이하 신고자 2만5000명이 241억 원을 기부 1인당 97만4000원, 30대는 11만8000명이 2020억 원을

7) 이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에서 검색 가능하다.

조사개요에 대해서는 http://kosis.kr/metadata/main.jsp?c_id=1977013 [2010.4.5 방문] 참조.

8) 강철희·이종은·배문경,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09, p.20 참조.

9)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2010.4.5 방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부 1인당 171만6000원, 40대는 20만 명이 4682억 원을 기부 1인당 234만5000원, 50대는 15만 명이 4220억 원을 기부 1인당 282만2000원, 60대는 5만1000명이 1933억 원을 기부 1인당 375만6000원, 70대 이상은 1만 3000명이 798억 원을 기부 1인당 630만3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기부금이 70대 이상 노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월 52만 원 정도를 기부한 셈이다. 70대 이상이 실제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상속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유산기부와 관련한 논의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유산기부를 포함한 계획기부에 대한 제도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에 대한 국세청 자료제시나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경우

계획기부(planned giving)는 미국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논문, 단행본 등에서 계획기부에 대한 기본설명, 상세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그 활용도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계획기부를 기부자 뿐만 아니라 기부단체의 실무자에게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¹⁰⁾

Giving USA(2009)에 나타난 미국의 2008년 기부 현황은, 기부총액은 3,076억달러, 그중 개인기부는 2,292억달러(전체의 75%), 기업기부는 145억 달러(5%), 재단기부는 412억달러(13%), 유증기부는 226억 달러(7%)를 구성하고 있다.¹¹⁾ 이중 계획기부에 대한 현황이 바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후술하는 다양한 계획기부의 현황 중 유증(Bequest)이 가장 흔한 계획기부로 꼽힌다. 신탁(Trust), 퇴직연금(Retirement plan, 각 개인은 자신의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며, 소유자가 죽을 시 자선단체에 계좌를 넘기는 형태), 유언 등도 활용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기부방식을 금융상품 개발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민법, 상법 등 민사법 뿐만 아니라 계획기부가 재무계획의 일부로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계획기부에 대한 인식과 법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계획기부 법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미국에서 활용되는 계획기부 유형의 그 수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에서 활용되는 계획기부를 유형별로 살펴 그 법적 구조를 다음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0)인디애나 대학의 기부센터가 그한 예이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http://www.philanthropyiupui.edu/> [2010.4.5방문]참조.

11)http://www.guidestar.org/board/board.asp?b_idx=2326&pg_sel=vi&tb_id=b_donation_info [2010.4.5방문]참조.

III.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1. 기부형식의 유형화 기준

기부자의 재산은 현금, 증권, 부동산, 동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방식의 기부가 행해질 수 있다. 또 1회적인 기부일 수도 있으나 정기적인 기부일 수도 있다. 기부자가 기부를 통하여 세제 혜택 이외의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기부행위가 생전행위에 의할 수도 있으나 유언에 의할 수도 있다. 재산의 이전 방식도 신탁의 설정을 통할 수도 있으며 단순한 이전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형식의 기부가 행해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인 구조를 파악하려면 다양하게 행해지는 기부 형식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새로이 단체를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 신탁을 설정하여 기부하는 경우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¹²⁾ 이들 유형마다 기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여부 및 시기, 원본과 수익의 귀속주체, 과세상 혜택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큰 유형별로 더 세부적인 유형구분과 그 법적 의미를 별개의 항목별로 살펴본다.

2. 기존의 자선단체에 대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

기존의 자선단체에 대하여 기부를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의 재산이전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현재 약정이 있더라도 사후에 재산이전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증여와 유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2) 계획기부의 법적 유형에 대해서는 미국의 문헌에서는 교과서 차원의 기본적인 설명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Richard D. Barrett, Molly E. Ware, CFRE, *Planned Giving Essentials* (2nd ed), Aspen Publishers (2002), Debra Ashton, *The Complete Guide to Planned Giving: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Compete Successfully for Major Gifts* (3rd ed), Debra Ashton (2004)의 경우가 그 예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헌에서 통상적으로 소개되는 계획기부의 법적 유형을 위 세 가지 유형에 맞추어 재정리하고자 한다.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당 부분의 출처를 밝힌다. 위 유형 이외에도 보험상품을 이용한 기부도 있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신이 지급하지만 보험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보험계약도 가능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보험상품의 경우는 따로 논하지 않는다.

(1) 대가없는 증여가 있는 경우

예컨대 기부자가 100,000달러의 현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대가없이 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개 기부자가 여유자금을 가진 부자인 경우가 그 특징이며, 기부자로서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³⁾

주식 등 평가 가능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현금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예컨대 기부자가 20,000달러에 구입하여 현재 시가가 100,000달러인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는 높은 평가차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부자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100,000달러에 대하여 소득세공제가 행해짐으로써 기부자는 결국 80,000달러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¹⁴⁾ 현물재산의 경우에는 평가문제가 존재한다.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시스템도 계획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현물재산의 과대평가의 문제가 과세상 문제가 되고 있다.¹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¹⁶⁾에 따라 과대평가에 대한 가산세를 두배로 늘리는 등의 제한을 가하는 세법개정이 있었다.¹⁷⁾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대평가의 경우 가산세 및 조세포탈죄의 적용가능성이 있어 현물재산의 과대평가 문제에 대한 제재시스템은 일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 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평가시스템과 평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그리고 평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미국과 비교하여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있고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0%까지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의 부담도 적지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담도 큰 부담이 된다. 기부시에는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더욱이 이러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

13) Richard D. Barrett/Molly E. Ware, CFRE, *op. cit.*, p.53.

14) Ibid.

15) IR-2010-32, March 16, 2010. 이 중 과대평가의 문제를 지적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Often these donations are highly overvalued or the organization receiving the donation promises that the donor can repurchase the items later at a price set by the donor."

16) 2006년 연금보호법은 1974년 제정된 종업원퇴직금보장법(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이후 가장 중요한 연금입법으로 평가받는 법이다. 이에 대해 국내 문헌에서 그 개요가 소개된 바 있다. 박찬호, "미국의 2006년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 대한 소개", 법령정보 Newsletter 2006년 10월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 10.15, pp.37-43 참조.

17) 위 세법 개정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irs.gov/charities/article/0%2C%2Cid%3D161145%2C00.html> [2010.4.5 방문] 참조.

산세의 부담이 줄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기부단체의 경우 위 거래단계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주택의 시가만큼의 재산이 줄기는 하지만 주택을 양도하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부담할 세금을 고려하는 경우 기부에 따른 재산감소분은 적을 수 있고 주택 시가 만큼의 소득공제의 혜택(한도 제한이 존재하기는 함)이 주어질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부담이 높다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세제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가있는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에 대가가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가양도의 경우와 부담부증여의 경우이다. 저가양도는 즉시 현금화가 쉽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 볼 수 있다.

가. 저가양도

장기평가이익이 있는 부동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편익이 있다. 첫째, 기부금액과 기부자의 소득세공제가 그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MV)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고, 둘째, 기부자는 평가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피할 수 있고, 그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받아야만 하는 양도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셋째, 본인 스스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¹⁸⁾

장기평가이익이 있는 부동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자의 소득공제액은 기부한 연도에 그 기부자의 조정후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30%까지 인정되며, 공제되지 못한 것은 추가로 5년동안 각 연도의 조정후총소득의 30%에 달할 때까지 이월공제가 허용된다.¹⁹⁾

예컨대 50,000달러에 구입하여 현재 시가가 200,000달러인 부동산을 50,000달러에 자선단체에 저가양도(Bargain sale) 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차액 150,000달러에 대해서 소득세 공제가 인정되며,²⁰⁾ 이외에 기부자는 양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심정적으로 기부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물론 150,000달러가 전액 공제되지 않았다면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저가양도의 문제는 대가없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와 거래된 가액의 차이를 계산해야 된다는 점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는 문제가 남는다.

18) Qp.ct., p.59.

19) Qp.ct., p.59.

20) Qp.ct., p.53.

나.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기부자가 자선단체로부터 기부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도 과세상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가에는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대가를 받고 이 경우 어떠한 과세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미국법상 인정되는 부담부증여로는 기부연금(Gift annuity) 및 주택에 대한 잔여권(Remainder interest)을 갖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대중적인 life-time 기부는 연금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부와 투자를 결합한 것이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기부이며, 즉시 자선기관의 재산이 되지만 자선기관은 연금수급권자의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연금지급율은 미국기부연금위원회(American Council on Gift Annuities)의 권고안에 기초해서 결정된다.²¹⁾ 이것은 1927년 자선단체간 격렬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현재 1,400개 이상의 대표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연금수혜자가 사망한 때에 최초 기부금액의 50% 이상이 기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부연금은 연금과 관련하여 투자관리 및 행정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이다. 이 기부연금에는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따라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Immediate Gift Annuity), 특정 시점부터 지급되는 형태(Deferred Charitable Gift Annuity)로 구분할 수 있다.²²⁾

가) 기부연금(Immediate Gift Annuity)

자선단체가 종신 수익 동의를 통해 현금이나 상장 증권을 기부받고, 기부자나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수혜자에게 생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 연금 동의서의 계약 조건에 따라, 현금이나 상장 증권을 기부받는 대가로 수혜자는 수혜 기간 동안 그리고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계약 당시에 확정된 지급액과 횟수에 따른 수입이 보장된다. 즉 기부자나 기부자가 지정한 수혜자는 자선단체의 가용 자산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며, 수혜자의 수와 연령 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마지막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부의 잔여 가치가 재단 영구기금에 귀속된다. 이 형태의 기부는 기부자에게 공익성기부금공제,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고정된 수입의 확보, 자본이득세의 절감, 상속세의 절감 등의 편익이 있다.²³⁾

예컨대 70세인 Mary가 10,000달러에 취득하여 현재 50,000달러인 저배당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는 정확히 20,233달러의 연방소득세공제를 받을 것이고(이 액수는 나이 및 연간 지급액의 규모에 기초한 것임), 그의 소득세 신고 시 AGI의 30%에 달할 때까지 인정되며 그 해에 전액 공제되지 않으면 추가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된다. 그는 매년 7.5%, 즉 매년 3,750달러의 연금을 받게 되고, 매년 지급액 중 374달러

21) <http://www.acga-web.org/giftrates.html> [2010.4.5 방문]에서 권고기준율이 제시되고 있다.

23) *Op.cit.*, p.47

24) *Op.cit.*, p.47

는 15.9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다. 50,000달러를 기부한 때에 자본이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에 매년 연금액 중 1,497달러는 첫 15.9년 동안 자본이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70세의 기대수명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주식을 팔고 다시 기부하였다면 아마도 25,000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Mary는 그의 소득을 증가시켰으며, 소득세와 상속세를 절감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었다.²⁴⁾

미국의 경우에는 기부재산 가액만큼을 기부시점에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고, 그 대가를 받은 시점마다 연금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이 기부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기부시 연금의 현재가치화한 금액만큼을 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것이다. 다만 연금을 현재가치화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재산과 관련한 연금수령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제상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연금(역모기론)²⁵⁾이 기부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주택의 소유권을 즉시 넘기는 형태가 아니고 담보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소유권이전 여부와 과세문제가 달라진다. 주택연금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의 소득공제(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거주,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200만원 한도), 재산세 25% 감면(주택가격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감면)이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연금을 받기로 한 경우 주택의 저당권 설정당시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과세의 적용을 받는 구조이다. 연금을 현재 가치화하여 주택의 저당권 설정당시 양도소득세 과세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상 양도라도 저당권 설정의 법형식을 취하므로 저당권 설정에 따른 과세문제로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이후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문제인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그 자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2.19. 신설)

24) *Op.cit.*, p.47의 example

25)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http://www.khfc.co.kr/mortgageloan/mortgageloan_util02.jsp[2010.4.5방문] 참조.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 · 매분기별 또는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2008.2.29. 직제개정)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 ②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2.19. 신설)
 - ③ 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2.19. 신설)
 -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8.12.31. 개정)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나) 기부거치연금(Deferred Charitable Gift Annuity, DCGA)

기부거치연금은 자선 기부 연금과 마찬가지로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계약 당시에 확정된 지급액과 횟수에 따라 수입을 보장하는 기부이다. 그러나 특정 기간(최소한 기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금 규모는 기부 액수, 기부 당시의 연령,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의 수혜자의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 연도에 자선 기부로 인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신 수익 동의’ 기부는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기부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은퇴 계획에도 도움이 되며,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DCGA는 특히 기부대상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합하며, IRAs나 Keoghs,²⁶⁾ 401(k)s 등을 통해 기부금 공제를 최대화하려는 전문가그룹들의 은퇴계획에 있어서 특히 유용하다.²⁷⁾

예컨대 50세의 외과의사인 Ralph는 10,000달러에 취득하여 현재 50,000달러인 mutual fund의 지분권을 DCGA 조건으로 기부하였다. 그는 29,776달러의 연방소득세공제를 받을 것이고 매년 15.3%로 결정된

26) Keogh Plans은 미국 자영업자 및 소기업인 퇴직연금의 한 유형이다.

27) Q.p.cit., p.48.

7,650달러의 연금을 65세부터 받을 것이다. 게다가 65세 때의 개인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매년 지급액 중 209달러에 대하여는 19.9년 동안 세금이 면제될 것이다. 그는 기부당시에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19.9년 동안 매년 지급액 중 814달러에 대하여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만약 그가 이것을 팔고 다시 기부 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40,000달러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될 것이다. 게다가 그의 부동산은 상속세 및 유언검인비용 등을 감소시킬 것이다.²⁸⁾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형태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면 그 수령이 기부당시가 아니더라도 기부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기부의 대가인 연금수령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문제될 것이다.

다) Retained Life Estate Gifts

기부자가 주택을 자선단체에 이전하지만 평생 동안 거주할 권리는 유보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주택이 그의 가장 주요한 자산이고 또 평생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사후에 가족을 위한 주택으로서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하여 평생 거주할 권리의 평가액을 공제한 자선단체의 잔여권(Remainder interest) 가액만큼 소득세 공제가 인정된다.²⁹⁾ 이를 통하여 기부자는 기부금공제, 평생동안의 라이프스타일 유지, 자본이득세의 회피, 상속세 절감이라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³⁰⁾ 이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기부자는 주택이나 별장, 또는 농장에 대해 평생동안 거주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선단체에 그에 대한 권리(a title of a residence)를 이전한다. 조세목적상으로는 이 경우 재산은 “life estate value”와 “gift value”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³¹⁾

예컨대 75세, 70세의 부부가 75,000달러에 매수하여 현재 FMV가 300,000달러인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들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지불하면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자는 그들의 연령과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85,346달러의 소득세공제를 받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집을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225,000달러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³²⁾ 미국의 경우는 기부시 잔여권(Remainder interest)만큼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기부재산의 현재가치에서 잔여권의 대가를 뺀 만큼을 소득공제로 인정하고, 잔여권에 따라 생활을 하여 임대료 등 별도부담을 지급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과세를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권과 관련하여 잔여권(Remainder interest)이라는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유권의 경우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흘러나오기는 한다.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전세권이나 임

28) *Op.cit.*, pp.48-49.

29) *Op.cit.*, p.54.

30) *Op.cit.*, p.49.

31) *Op.cit.*, pp.49-50.

32) *Op.cit.*, p.50.

대차계약 등에 따라 종전 소유자가 이전대상 자산의 사용을 일부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현상을 미국의 잔여권과 같은 법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처럼 소유권이 이전하면서 앞으로 지급할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화한 액수만큼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임대료는 현재가치화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있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이 있기는 하다. 기부단체와 기부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고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환산가액이 1억원 이상)에는 기부자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산이전후 기부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세 과세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³³⁾”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3) 유증(Bequest)

유언에 의해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서, 계획기부의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형태이다. 미국 세법상 공익성을 가진 자선단체나 공익성을 가진 트러스트에 생전증여를 하는 경우 또는 유증을 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재산에서 제외한다.³⁴⁾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보하면서 후에 자신이 선호하는 자선단체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기부자들에게 매력적인 형태이다. 많은 기부자들은 자발적인 자선이라는 관념을 상속세를 통한 비자발적 기부라는 관념을 선호하고 있다. 많은 형태의 유증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³⁵⁾

가) 특정유증(Specific Bequest) - 재단에 구체적인 자산을 특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주식 500주를 재단에 유증한다.”

나) 채무를 제외한 잔여금 유증(Residuary Bequest) - 모든 빚, 세금 또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분의 일부나 전부를 유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모든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유산의 잔여 부분 중 50%를 재단에 유증한다.”

다) 조건부유증(Contingency Bequest) - 어떤 조건하에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인의 배우

33)연 간 100분의 2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4)John K. Moality,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5th ed.), West Group (1994), pp.353-359.

35)Op.cit., p.51.

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본인은 일리노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에 (얼마)를 유증한다.”

라) 정액유증(Bequest of a Fixed Amount) : 기부자가 “본인은 재단에 (얼마)를 유증한다.”라고 지정하는 경우이다.

마) 정률유증(Percentage Bequest) : 기부자가 “본인은 재단에 내 재산의 ○○%를 유증한다.”라고 지정하는 경우이다.

바)이연기부(Deferred Gifts) : 기부자의 유언장에 과거에 서술된 이연기부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유언에 의한 CRT, 유언에 의한 CLT, 유언에 의한 CGA 등이 이러한 조건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상속세(연방세로서 유산세라고도 한다, Estate tax)가 폐지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유증에 의해 재산의 이전이 사망을 계기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 문제된다. 미국의 경우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단에 대한 상속세 계산시 그 기부재산을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을 경유하여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기부한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7조). 다만 유증이라는 것이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된다. 따라서 유언에 의한 상속의 활용정도, 유언에 의한 상속시 법령상 유언형식의 제한 등에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3. 새로이 기금(Fund)을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가 새로이 Fund를 만들면서 그 Fund에 기부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Community Fund와 Donor Advised Fund가 있다. 이러한 형식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부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리계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³⁶⁾ 규모가 작거나 신설 비영리기관에게 매우 유용한 형태이다.³⁷⁾ 하나 혹은 수개의 자선단체의 자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 혹은 복수의 공공자선단체들이 설립한 자선펀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³⁸⁾

36) *Op.cit.*, p.55.

37) *Op.cit.*, p.52.

38) *Op.cit.*, p.52.

새로이 어떠한 단체 등을 설립하여 그곳에 기부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탁형과 회사형의 경우 각각의 과세문제가 달라진다. 공익신탁의 문제는 신탁형에 대한 것이고, 공익법인의 문제는 회사형에 대한 것이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신탁형과 회사형의 경우의 형평성 문제가 되듯 기부자가 어떠한 단체를 통해 공익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부관련 공익법인에 대한 법제도와 공익신탁에 대한 법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후 공익신탁을 둘러싼 법제도 개선이 이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Fund의 경우에도 그 자체가 법인격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공익법인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복잡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의 Fund와 같은 유형에 우리나라의 공익법인도 아닌 그렇다고 공익신탁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경우만 일단 소개하기로 한다.

(1) 공동수익기금(Community Fund)

여러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공동’ 투자 기금을 기부받아 자선기관의 전문 투자자의 관리를 받는 기금이 다. 기부자는 기금의 현 가치에 따라 분할된 ‘단위(Unit)’를 구입하며, 기금의 순이익 가운데 구입한 단위 별로 배당금이 기부자나 기부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분기별로 지급된다. 최소 기부액은 미화 5,000달러로서 현금이나 상장 증권 등을 취소 불능의 상태로 기부하면 된다.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은 기부금의 시장 가치와 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기부자는 현금이나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증권 등을 기부할 수 있다. 마지막 수익자가 사망한 후(대개 1인 또는 2인임),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표시되는 Fund의 지분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고 자선단체의 재산이 된다. 추가적인 불입은 허용되지만, 배당소득은 수령자에게 전액 과세된다.³⁹⁾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쉬우며, 매년 actuarial Basis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세공제가 인정되고, 기부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생존한 동안 소득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⁴⁰⁾ 설립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 된다.⁴¹⁾ 이와 같은 기금은 규격화되어 있어 기부자에게 법적 수수료 요구되지 않으며 그래서 100,000달러 미만의 기부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⁴²⁾

예컨대 68세, 66세인 John과 Mary는 10,000달러에 취득한 FMV 50,000달러 주식을 생존한 동안 배당소득을 받는 것으로 하여 PIF에 기부하였다. 이 경우 17,680달러의 연방소득세공제가 인정되며, 미공제분은 5년

39) *Op.ct.*, p.46.

40) *Op.ct.*, p.55.

41) *Op.ct.*, p.46.

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첫해에 펀드로부터 5.5%에 해당하는 2,75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미래의 수령액은 펀드의 소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들은 자본이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⁴³⁾

(2)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은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단체, 가족, 개인을 대신하여 기부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⁴⁴⁾ 즉시 자선기부금공제를 인정하면서도 기부는 실제 그들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나중에 지출하는 형태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 설립이 쉽고 비용이 낮고 직접적인 기부나 사적재단을 대신할 유연성 있는 기부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적으로 기부금이 전달될 자선단체에 대하여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기부 이후에도 기부자의 통제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기부형태라 할 수 있다.⁴⁵⁾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기는 부담스러워하지만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일정한 참여를 원하는 기부자에게 인기가 있는 기금이라 할 수 있다. 기부자는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통해 기부사용처의 추천이나 조언을 할 수 있다.

4. 신탁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다양한 신탁이 금융상품의 하나로서 기부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활용되는 특색 있는 신탁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자선 잔여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1) 의의

자선 잔여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은 기부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철회가 불가능한 신탁이다. 신탁이 종료하면 신탁

43) *Op.cit.*, p.46.

44) *Op.cit.*, pp.46-47.

45) http://en.wikipedia.org/wiki/Donor_advised_fund[2010.4.7방문]

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이러한 신탁은 재산 증식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상속 계획에 기부를 포함시키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난 1969년 자선단체나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2) 설정방법

신탁의 돈은 기부자가 쓸 수 있고 사후에 기부한 기관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 즉 재산의 소유권은 넘겼어도 기부자가 자선신탁 수익을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탁이며, 여기에는 재산을 내놓은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를 일정 부분 보장해 주자는 법 취지가 담겨있다.

자선 잔여 신탁은 현금, 부동산, 상장 증권, 비공모 주식, 채권(세금 면제 채권 포함), 그리고 기타 자산 등을 취소 불능으로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가능하다. 기부자와 재단에 합의한 지급률에 따라 계약 당시 신탁 원금의 최소한 5% 이상의 연금이 지급된다.

3) 특징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CRT는 취소가 불가능한(irrevocable) 신탁계좌이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 설정해 둔 조항들을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 신탁설립시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되는 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선 소득세 공제가 낮아지고 심하면 신탁의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활용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CRT 전문가들은 매년 신탁 소득의 7%내가 적당하다고 권고하고 있다.⁴⁶⁾

4) 장점

첫째, 세제상 혜택이다. 이 신탁을 설정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다. 예컨대 기부금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식은 현재 가치대로 평가되어 전액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도 없다. 둘째,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 보장이 가능하다. CRT에 기부한 재산은 이전과 다름없이 가치가 계속 불어나게 된다. 현금 기부의 경우 주식 채권 펀드 등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활용되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소득을 분배받는 것은 물론 기부자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등도 수혜자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은퇴-상속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부 금액에 제한이 없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으며 사망 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CRT에 편입한 자산은 상속세 대상이 되는 유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 수입의 수

46) 중앙일보, "CRT(자선 잔여신탁), 착한 일 하고 돈도 벌 고", 2007.1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92494)에서 원문 확인 가능)

혜자로 자녀를 설정해두면 상속효과를 보면서 자선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종류

CRT의 소득 사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CRAT(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는 연금처럼 신탁 수익을 얼마든 애초 설정한 고정액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CRUT(charitable remainder unitrust)는 신탁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는 형태인데, 고정액 지급방식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CRUT가 더욱 인기가 높다.

(2) Charitable Lead Trust(CLT: 수익기부형태)

기부자가 신탁을 설정하여 100,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신탁에 이전하고, 신탁으로 하여금 자선 단체에 매년 8,000달러씩 15년 동안 지불하도록 지정한 후, 신탁의 종료시에 해당 자산을 기부자의 자(子)에게 돌려주는 형식의 신탁을 말한다. 생전행위로도 가능하고, 유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것은 매우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궁극적으로 수익자인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고평가되는 잠재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족은 생존기간 동안 그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없이 살아가려는 기부자에게 적합한 형태이다.⁴⁷⁾

5. 시사점

(1) 미국 계획기부의 특성

미국 제도에서 나타난 계획기부는 다음과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계획기부를 위해 매우 다양한 기부방식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기부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 다양한 방식의 계획기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는 법체계가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잔여권(Remainder)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Retained Life Estate와 같은 형식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자선단체에서 연금을 주는 방식도 인정되기 어렵다. 셋째, 유증(Bequest) 방식은 우리 법제에서도 가능하지만 유류분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으며, 후손의 생활보장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47) *Op.cit.*, pp.55-56.

(2) 자산잔여신탁 등의 적용가능성

후손의 생활보장 등이 가능하고 절세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신탁(Trust)이 이용될 수 있는데, 미국법상의 신탁은 우리 법체계에 적용이 가능할까. 신탁은 영미법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소유권의 분리 현상 즉 법률적 소유자와 경제적 소유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미국법상의 신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민법과 소유권의 배타성, 신탁재단의 법적 실체성(법인성),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계획기부에서 인정되는 CLT, CRAT, CRUT 등의 적용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의 결합 형태로서 도입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가능성을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법상의 신탁은 하나의 물건에 각각 독립한 legal right와 equitable right가 이중으로 성립하는 제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 특히 물권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의 배타성, 절대성, 一物一權性과 모순된다.⁴⁸⁾ 우리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하므로,⁴⁹⁾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법상의 신탁과 다르게 소유권의 배타성과 일물일권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신탁을 법적 실체(entity)로 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법적 실체가 아닌 계약관계로 보고 있어 모순된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것이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신탁법 제21조), 수탁자에게는 분별 관리의무가 인정되며(동법 제30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고(동법 제20조),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또한 신탁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신탁 특히 유언신탁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유언자유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영미법도 유언자유의 폐해가 컸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가족적인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유언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큰 폭으로 수정하는 재량권을 입법적으로 주어 왔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대륙법은 그에

48)水野紘子(<http://www.law.tohoku.ac.jp/~parenoir/shintakuhou-kaisei.htm>)[2010.3.24방문]

49)대법원 2002.4.12.선고 2000다70460판결.

따라 유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예컨대 재산의 소유자가 신탁을 설정해 배우자의 생존 중에는 배우자만을 수익자로 하고,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아이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⁵⁰⁾에는 아이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신탁제도는 이 경우 유류분 제도와 융화(相容)되지 않는다. 또한 예컨대 뉴욕주법은 신탁을 설정한 시점에서 살아 있던 설정자 유족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21년 뒤까지 신탁이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유언신탁의 경우 피상속인의 마지막 손자가 사망한 후 21년까지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면, 아마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0년 정도까지는 설정자의 재산상의 권리의 완전성은 회복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륙법에 입각한 현재의 민법 체계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경우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넘는 신탁설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고, 또 유류분권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자선잔여신탁 등의 도입 여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 유류분권의 문제는 자산 전체를 신탁하지 않는 한, 그리고 최소한 사망 1년 전에 행해진다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계산시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안 경우에만 1년 전의 증여도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의 차원에서 유류분을 제한하는 입법론 논의⁵¹⁾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른 입법론상 유류분에 대한 제한도 가능할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상의 신탁은 우리의 신탁과 다른 점은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 또는 보완을 통해 수용가능 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체계의 수정 또는 보완까지 하여 미국법상 다양한 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대한 합의일 것이다. 공익신탁에 대한 법정비는 공익법인과 의 형평성이라는 관점 이외에 공익증진이라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한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익신탁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에 관한 법개정 논의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

50)能見善久,「現代信託法」,有斐閣(2004),p11.

51)심종진·구자은,“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제10권 제3호, 2009.9, pp26-27참조. 해석론을 통해 유류분을 제한하는 견해도 있다.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해 해당 상속재산의 일부의 반환이 아닌 가액반환도 가능하다는 견해로서, 김영심,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소고”, 「서강법학」, 제10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회, 2008.12참조.

52)일본의 경우 2006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 개정 이 있었다. “공익신탁에 관한 법률”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공익신탁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공익신탁에 대한 법제도 제안에 대해서는, 新井 誠, 「信託法」(第3版), 有斐閣(2008), pp425-427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익신탁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계속 논의된 바 있다. 그 예로, 이준성, “公益信託에 관한 研究:財團法人과의 比較 및 그 實用化를 中心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논문집,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1988.12이나 김진우, “公益信託法理와 法政策的提言:公益財團法人制度와의 比較를 통하여”, 「비교사법」 14권 상,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등을 들 수 있다. 위 연구들은 공익법인과의 형평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어: 정책적 제언

본 논문에서는 계획기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인식이나 법제도적으로 앞서 있는 미국의 다양한 계획기부의 유형을 소개하고 그 기부유형 중 특히 신탁에 대한 부분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미국의 재산관련 법이나 세제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의 계획기부에 대한 유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자산잔여신탁의 경우처럼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의 결합 형태로서 우리나라에 그 도입이 가능한 것도 있다. 계획기부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법제도가 그러한 다양한 모습을 막고 있다면 우리나라 재산관련법이나 세제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제도 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부자의 기부의사를 법적 형식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법 차원의 유연방식에 대한 것과, 기부자의 시가 및 기부 원본 및 수익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신탁제도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시 함께 고려할 사항도 부언한다.

1. 유언을 통한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언제도의 유연화

유산기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시 유언을 통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분배될 것이다. 그런데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상 제한된 유언방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가 어려운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발생한 바 있다. 유언방식의 제한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상속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경직된 유언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유언방식을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사인증여의 형태로 유산기부를 함으로써 이러한 유언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기부받는 단체의 경우 사인증여의 형태를 통해 유산기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망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처리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자가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언방식에 의한 유산기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경직적인 유언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부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허용된 유언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규율할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상속재산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방식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거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민법 제1065조에서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제한하고 있고, 민

법 제1060조에서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 5가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완화하거나 민법 제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을 완화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의사에 따른 기부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따르더라도 유류분제도의 활용을 통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보장이 될 것이다.

유언방식의 변화는 민법 자체의 개정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언방식을 제한하는 취지를 강조하는 입장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이 공익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언방식의 단순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필증서의 날인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의 경우 완화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2. 신탁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부를 하지만 사망전까지 상속재산의 수익은 자신이 향유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망이후 원본 또는 수익을 상속인에게 향유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이라는 원본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신탁제도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⁵³⁾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그 절차가 간단한 신탁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로는 신탁법 개정이나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공익신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상 신탁에 대한 법개정이외에도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신탁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부와 같은 세제상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익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법인세법 제51조).

그러나 신탁재산 자체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이 누군가에게 귀착된다면 그것은 결국 본래의 위탁자와 수익자간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신탁제도가 상속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신탁과 관련한 과세상 혜택은 신탁의 도관체로서 이중과세의 문제와는 별개로 공익에 사용된다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과세상 혜택이 주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53) 상속수단으로서 신탁제도의 소개와 위탁자가 신탁계약이나 유언신탁을 통해 사후 재산의 귀속관계를 자유로이 설정하는 경우 상속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12가 있다.

그런데 신탁재산의 대부분은 공익법인에 귀속되고 신탁재산의 일부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은 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추정하는 것이 항상 맞는지는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위탁자인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최소한의 재산이나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재산을 모두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이 공익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의 일부가 귀속되는 것을 이유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정 금액 한도를 두어 위탁자와 수익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계획기부의 차원에서 기부가 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신탁시점에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따른 세제혜택을 허용하고⁵⁴⁾ 수익자가 기부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때에는 이를 소득과세의 원천징수제도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부자나 기부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한 생활수준의 보장을 하면서도 완전한 과세면제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계획기부 지원 법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병행

계획기부는 사전에 고액의 자산의 이전을 계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획하에 고액의 자산이 이전되는데 그 이전된 자산이 최종적으로 공익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되고 위의 유언제도의 유연화나 신탁형태를 이용한 계획기부에 대한 세제확대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장되었다.

그런데 계획기부가 발달된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16일 미국연방국세청에서 탈세유형을 발표하면서 자산단체의 악용, 신탁제도의 오용 등을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다.⁵⁵⁾ 계획기부의 개념을 이제 정립해 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획기부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다양한 계획기부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나 장애해소를 꺼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부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항상 기부단체의 투명성 확보⁵⁶⁾와 맞물려 논의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기부에 대한 법제도적인 지원확대와 계획기부를 통한 조세회피방지는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54)일본의 경우에 개인이 공익신탁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정 특정 공익법인)의 신탁재산이 되도록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특정 기부금으로 보고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일본소득세법 제78조 제3항). 모든 공익신탁의 경우는 아니고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이 그 신탁재산에 관련된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신탁사무의 실시에 관한 요건 및 증명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이상은 특정 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임), 일정한 공익목적에 관한 상당한 업적이 유지되어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의 경우에 한한다.

55)IR-2010-32, March 16, 2010.

56)기부단체의 투명성 확보와 기부금 활성화를 연계하는 것으로는, 서희열 · 심종진 · 조영탁,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8.6 참조.

참고문헌

강철희 · 이종은 · 배문경,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한국사회정책복지학회, 2009.

김영심,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소고”, 『서강법학』 제10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김진우, “公益信託法理와 法政策的 提言 : 公益財團法人制度와의 比較를 통하여”, 『비교사법』 14권 상,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박찬호, “미국의 2006년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 대한 소개”, 법령정보 Newsletter 2006년 10월호, 한국법제연구원, 2006.10.15.

서희열 · 심충진 · 조영탁,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8.6

손원익 · 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2

심충진 · 구자은, “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2009.9

이준성, “公益信託에 관한 研究 : 財團法人과의 比較 및 그 實用化를 中心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논문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988.12.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12.

Boris I. Bittker/Elias Clark/Grayson M. P. McCouch,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9th ed.), Thomson West(2005).

Debra Ashton, *The Complete Guide to Planned Giving: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Compete Successfully for Major Gifts* (3rd ed), Debra Ashton(2004).

John K. McNulty,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5th ed.), West Group(1994).

Richard D. Barrett/Molly E. Ware, CFRE, *Planned Giving Essentials* (2nd ed), Aspen Publishers(2002).

水野紀子(<http://www.law.tohoku.ac.jp/~parenoir/shintakuhou-kaisei.html>)

新井 誠, 『信託法』(第3版), 有斐閣 (2008).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2004).

<http://www.irs.gov> (미국연방국세청)

<http://www.kostat.go.kr> (통계청)

<http://www.nts.go.kr> (국세청)

<http://www.philanthropy.iupui.edu>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소)

<http://www.guidestar.or.kr> (한국가이드스타)

<http://www.acga-web.org/gifrates.html> (미국 기부연금위원회)

http://www.khfc.co.kr/mortgageloan/mortgageloan_util02.jsp (한국금융주택공사)

계획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문

오 준 석

숙명 여대 경영 학부 교수

서울시립대 박훈교수님과 이상신교수님의 공동연구에 대해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I. 계획기부의 특성

기부를 크게 일반기부와 계획기부로 구분한다면, 일반기부는 일시적, 단기적, 이타적동기에 의한 기부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계획기부는 지속적, 장기적, 이성적 동기에 의한 기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기부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필요할 때마다 행사나 이벤트 등의 단기적인 동인(shock)을 자극하여야 하고 이는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데 비해서, 계획기부는 한번 기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기부가 시스템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생활속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기부는 거액기부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기부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타적 동기가 아닌 이성적 동기에 의한 기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훈교수님께서도 법제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신 “계획기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러한 측면에서 깊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부대상물의 속성에 있어서 일반기부는 현금기부가 보편적인데 비해 계획기부는 자산기부 특히 토지나 건물등과 같은 부동산 기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에는 유동화시키

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및 세금납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상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경우, 계획기부가 조세회피나 골동품과 같은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론에서 지적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II. 질의사항

박훈교수님께서서는 결론으로 유언제도의 유연화, 신탁제도의 개선 그리고 법제도의 악용에 대한 대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미국법제와 신탁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잔여분 권리와 법률적인 개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기부상품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연구하신 내용과 자료를 수집하신 경험을 토대로 할 때, 다음 세가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법제도 개선으로서 신탁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는 미국의 계획기부가 유산과 신탁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보험의 beneficiary를 기부재단으로 하는 기부보험상품이 출시되었는데, 이러한 기부보험상품을 제도적으로 장려함으로써 계획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고액기부 또는 계획기부는 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공익목적을 실현하고, 동시에 대학병원 등을 통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병원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설립과 관련된 문제가 법률적 쟁점이 되고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병원이 영리법인화 되었을 때, 계획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졌을 때, 결국은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부자는 고액을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자칫하면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국법제와의 비교를 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훈교수님과 공동연구자이신 이상신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정 광 진

변호사, 법무법인 올존

국내에 생소한 계획기부의 개념과 외국 입법례를 소개해 주신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부, 자선 문화는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국제 통계 자료에서 노년층의 기부가 활발하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획기부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잠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과 비교하여 실제 계획기부의 규모가 크지 않고 널리 활성화되어 못한 것은 사회경제적 수요를 법제도가 담아내지 못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는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발표의 취지에 동감하고 발표 내용에 몇 가지 점을 덧붙이면서, 발표자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기부자의 이기심과 기부의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유연한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발표자가 소개한 미국의 계획기부의 특징은 기부자나 그 후손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기부를 해도 제도적으로 기부, 자선행위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부연금이나 retained life estate gifts 또는 자선잔여신탁 제도는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기부하되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또는 그 후손들이 기부한 재산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이기심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을 평균인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기부는 사유재산을 통하여 경제적인 편익을 향유하거나 후손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려는 인간의 본능과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의 객관적인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와 같은 계획기부 관련 제도는 사회 평균인

들의 본능과 기부의 공익성을 조화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기부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할 계획기부 제도도 소수의 고도로 성숙한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사회구성원들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성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외국의 입법례 도입시 현실성 검토의 필요에 관한 의견

발표자가 소개한 미국의 계획기부 제도가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우리에게 낯선 법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컨대, 기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제도가 우리의 현행 재산권 제도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retained life estate gifts에서 기부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지만 생존하는 동안 그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 자선단체는 잔여권(remainder interest)을 증여받았다가 기부자가 사망하는 경우 온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미국법상 잔여권은 영미의 법적 전통에서 유래하는 독특한 물권 개념입니다. 재산권 제도 내지 물권 개념은 각 사회의 전통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여 법률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권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잔여권은 현행법상 계획기부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론적으로도 영미법상 잔여권은 소유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한 소유권 개념을 채용한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법제에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법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잔여권이라는 새로운 물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자선단체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사망하기 전까지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용대차계약이나 기타 다양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retained life estate gifts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계획기부 제도의 지원과 남용 방지책의 조화에 관한 의견 및 질의

계획기부 제도의 지원은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제상 혜택을 의미하고,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기본적으로 세법상 공익법인등에게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의 입법례와 다르지 않지만, 당해 공익법인에게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또한 기부자가 기부 후 공익법인으로부터 출연한 재산을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출연한 재산 가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4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9조). 한편, 출연재산의 종류에도 제한을 가하여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여 기부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습니다(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현행 세법 하에서는 미국의 기부연금이나 retained life estate gifts 또는 자선잔여신탁과 같은 계획 기부는 세제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주식을 기부받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효율적인 재산구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법상 의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유연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계획기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개인의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수행해야 할 자선사업을 개인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계획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조세회피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의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만 잠탈하는 행위는 당해 조세의 일실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전한 기부욕까지 파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부받은 재산의 용도 등을 확실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기부단체 내지 공익단체의 운영상 투명성 및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발표자도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발표자에게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성 결과가 있다면 청해 듣고 싶습니다.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제 개선 심포지엄